

의안번호	2221028
의 퇴 인	양부남 의원
회 답 일	2026. 9. 22.
추 계 번호	26A453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에게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08조 신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2조의2 제4항 신설 (실태조사)	● 미첨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8조 신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미대상(재정수입의 증가)

2. 상세사유

-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체납처분의 유예 및 정리보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전화조사·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2)

- 다만, 현시점에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원의 채용 규모·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실태조사원 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원을 채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자치단체별 채용인원·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태조사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22년 4조 3,492억원, 2023년 5조 287억원, 2024년 5조 1,85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 상위 3개 시도는 경기(1조 5,950억원), 서울(1조 1,625억원), 경남(2,868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시도는 세종(427억원), 울산(981억원), 광주(1,002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2022~2024년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43,492	50,287	51,858
서울계	9,776	12,027	11,625
부산계	2,239	2,641	2,834
대구계	1,005	1,195	1,813
인천계	3,739	3,866	2,772
광주계	747	876	1,002
대전계	869	1,056	1,149
울산계	741	828	981
세종계	302	336	427
경기계	12,726	14,409	15,950
강원계	923	1,081	1,213
충북계	1,059	1,217	1,314
충남계	1,659	1,887	2,052
전북계	1,121	1,248	1,400
전남계	947	1,120	1,287
경북계	2,106	2,240	2,153
경남계	2,712	3,374	2,868
제주계	817	885	1,019

자료: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lofin365.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